

긴급입찰 공고 사유서

□ 개요

- 용역명 : 신수도 에너지전환계획 2차 - 가스활용 최적화 로드맵
- 용역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300일
- 예정금액 : 금 380백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

□ 긴급입찰 사유

-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(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-12, 2021.7.1.)에 따라 조속한 용역 추진 필요
- 과업성과품 제출을 위한 기간이 부족하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여 공고기간 단축 필요

□ 근거법령

-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(입찰공고의 시기)
 -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
 1.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2.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
 -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
 1.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
 - 1의2.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
 2.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 3.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·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4.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